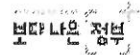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496호) 공포 알림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496호)이 2018년 10월 31일(수)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개정내용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자가치료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입절차 마련(제5조 등)
-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제21조)
  - \* ‘보고일자’로부터 5일 이내 →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 마약류통합관리센터가 병원·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을 검사하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22조의2)
- 표준품·시약 등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등 기재사항 간소화(제30조)
  - \* 성분명·분량, 업체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중량·용량, 저장방법, 품목코드 등만 기재
-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 신설(별표2)

※ 시행일 : 2018.10.31 (다만, 제30조 등 용기 등 기재사항 관련 조항 : 2019.11.1)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8년 10월 31일(수)자 관보, 우리처 홈페이지([www.mfds.go.kr](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496호) 1부.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수의사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이사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주무관 사무관 마약정책과장 전결 2018. 10. 31.

협조자

시행 마약정책과-5623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05 팩스번호 043-719-2800 / lucyah@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문서관리카드마약정책과-5623 2 - 2